##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171

발의연월일: 2022. 6. 28.

발 의 자:김경협·김민철·김병기

김영배 · 김정호 · 김주영

김한정 · 정성호 · 최강욱

최기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「국가정보원법」에서는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를 제4조제4항에 두고 있는바,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조문 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제5호). 법률 제 호

###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제5호 중 "제4조제3항"을 "제4조제4항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범죄경력조회·수사경력조회	제6조(범죄경력조회·수사경력조회
및 회보의 제한 등) ① 수사자	및 회보의 제한 등) ①
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	
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	
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	
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	
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	
할 수 있다. 다만, 제8조의2제2	
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	
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	
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	
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	
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	
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3	5 <u>제4조제4</u>
<u>항</u> 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	<u>항</u>
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	
사를 하는 경우	
6. ~ 10. (생 략)	6. ~ 10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